



물류시설 개발 · 배치 종합적 조정기능 강화



건설교통부 물류시설정보팀
팀장 고 칠 진

본 내용은 다음 2월 4일부터 개편되어 시행예정인 물류정책기본법 및 물류시설의 개발 ·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설명과 배경 그리고 개편된 법률시행에 따른 물류효율화의 기대효과 등을 건설교통부 물류시설정보팀 고칠진 팀장에게 들어본다.

- 편집자 주 -

급변하는 물류환경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난 2007년 8월 3일 '화물유통촉진법'은 물류정책의 기본법인 '물류정책기본법'으로,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은 물류시설의 기본법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확대 개편하였다. 동법률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현재 하위법령을 개정중에 있다.



기본법, 물류정책 조율기능 보장

‘화물유통촉진법’은 국내외적으로 물류산업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물류관련 정책기능이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물류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물류정책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물류정책의 종합조정기능을 보장하는 한편, 국제적인 물류경쟁이 심화되는 여건 아래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촉진 및 국제경쟁력 강화 등 국제물류의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였다.

동 법률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종전에는 물류의 범위를 화물의 운송·보관·하역에 한정하고 있었으나, 그 범위가 좁아 재화의 조달에서 소비 및 회수·폐기까지의 전 과정이 체계적으로 규율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재화의 조달에서 생산·전달·소비 및 회수·폐기까지의 전 과정을 포괄하고 이러한 활동에 부가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조립·분류 및 포장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물류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둘째, 물류관련 정책기능이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물류정책기능의 효율적인 조정을 위하여 전 부처를 통할하는 국가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구축할 필요가 있어 건설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동으로 10년 단위의 국가물류기본계획을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동 계획에는 국가물류정책의 목표와 전략, 물류기능별 및 운송수단별 물류정책의 종합·조정, 국제물류의 촉진·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국가물류기본계획의 종합·조정기능을 강화하였다.

셋째, 지식경제사회의 도래 및 인터넷혁명으로 물류환경이 디지털 물류환경으로 변화함에 따라 선진물류체계 구축을 위하여 첨단지식을 보급하고 지원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건설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기업에게 무선주파수인식 및 첨단화물운송체계 등 물류관련 신기술을 도입하여 적용할 것을 권장·지원하고, 건설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자원부장관은 물류공동화·자동화 및 물류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물류기업 등에게 다양한 정보를 쉽게 제공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물류 관련 정보의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 등과 협의하여 물류현황조사 등을 통하여 수집된 정보를 가공·분석하고 물류관련 자료를 총괄 관리하는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물류활동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물류전문기업을 통한 물류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나, 아직까지 그 비중이 선진국에 비하여 미흡한 점이 있어 물류전문기업을



통하여 물류활동을 하는 제3자물류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가물류시설의 매각과 제3자물류 관련 컨설팅을 지원하도록 하고, 제3자물류 활용에 관한 우수사례를 발굴·홍보하도록 하였다.

여섯째, 환경보호에 대한 일반 국민의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환경친화적 녹색물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건설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이 환경친화적 포장 재료를 사용하거나 환경친화적인 물류장비·시설로 변경하는 등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였다.

일곱째, 기업 활동의 국제화 및 다국적화로 생산·유통·판매가 글로벌화됨에 따라 세계 물류의 중심역할을수행할 수 있는 국제물류의 활성화 기반 마련이 필요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물류협력체계의 구축, 해외물류기업의 유치, 국내물류기업의 해외진출 등 국제물류의 촉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물류기업이나 관련 단체가 물류관련 국제기술협력 및 해외 물류시장의 조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였다.

물류시설 법체계 일원화, 중복투자 방지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은 물류시설의 효율적인 확충 및 합리적인 배진운영을 위하여 동법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현행 ‘화물유통촉진법’의 화물터미널 및 창고 관련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하여 물류시설 관련 법체계를 일원화하며, 물류시설의 중복투자 방지 및 물류시설의 종합적인 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종 물류시설에 대한 5년 단위의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제도 등을 도입하였다.

동 법률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첫째, 물류시설의 개발·배치에 관한 종합적인 조정기능을 강화하여 물류시설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물류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어 건설교통부장관은 항만시설을 제외한 물류시설에 대한 계획적공급, 지역별·규모별·연도별 배치 및 우선 순위, 물류시설 간의 연계를 위한 수송망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5년 단위의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건설교통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직접 물류시설을 지정·개발하거나 물류시설개발사업을 위한 인·허가를 할 때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과 상충되거나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둘째, 물류단지 개발시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따로 받는 경우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물류단지의 원활한 개발을 위하여 인·허가 의제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어 물류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시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범위에



건축허가 및 골재채취허가 등을 추가하고, 의제되는 인·허가 등에 관하여는 관계 법률에 따라부과되는 수수료 및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하였다.

셋째, 물류단지개발에 대한 지원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비율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적기 재원확보의 곤란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또는 정부의 보조금 등으로 조성되는 물류단지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물류단지개발사업에 대한 보조 또는 용자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유통단지 안에 설치되는 가공·제조 시설 및 정보처리시설 등 지원시설을 이용하는 자 또는 지원시설 건설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지원시설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도록하고 있었으나, 1996년 시행 이후 이를 부과한 사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공공시설이 아닌 지원시설의 이용자 및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어 유통단지 안의 지원시설에 따라 이용자 또는 지원시설 건설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과하는 이용자 및 원인자 부담금제도를 폐지하였다.

다섯째, 물류단지의 인근지역에서 물류단지에 필요한 도로·하수도 및 폐기물처리 시설 등 기반시설을 건설하는 경우 관련 인·허가 등을 따로 받아야 됨으로써 물류단지 입주자 및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기반시설이 적기에 마련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물류단지개발과 관련되는 사업을 물류단지 인근지역에서 시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하여는 물류단지개발사업에 관한 인·허가 등의 의제 및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규정 등을 준용하도록 하였다.

물류 관련 법률 개정으로 향후 국가 물류정책에 대한 정부내 조정과 부처간 연계 기능이 더욱 강화되고, 물류전문기업의 육성, 고급 물류전문인력 양성 등 물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 간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글로벌 물류네트워크 구축, 동북아 물류협력 강화, 해운분야의 국제물류 투자펀드 조성 등 물류산업의 국제화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물류시설의 개발·배치 등에 관한 사항이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물류시설의 개발이 가능하게 될 것이며, 물류단지에 대한 제도개선으로 물류단지의 개발사업의 활성화는 물론 물류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